

iction

지식재산권 용어사전

특허심판원

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 심 및 이에 관한 조사,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하에 설치. 특허심판원은 원장과 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.

특허법조약

27개조항 21개규칙 및 6개 합의선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.6. 2.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다. 현재 는 미발효 중이다. 국내 및 지역 출원절차 및 방식요 건의 통일화, 출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출원방식요 건의 완화, 특허방식요건에 대한 상이한 국제표준 도 입을 배제하고자 가능한 PCT(특허협력조약)규정고 려 등을 목표로 제정되었다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명세서를 대신하는 도면(drawion)의 제출만으로 출 원일 인정이 가능하고 출원서 양식 및 요건을 개정될 PCT 국제단계 요구조건을 준용하며, 재외자에 대한 강제대리 예외사항의 채택여부를 규정하고 2005. 6. 2 이후 희망하는 회원국은 100% 전자출원제도 시행 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단순한 출원인의 실수에 대한 절차의 추완 및 권리의 회복을 인정하고 있다. 우리 나라는 아직 가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가입여부에 대 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 중에 있다.

특허법상설위원회

특허법의 세계적 통일화(harmonization)를 위해 WIPO가 '98.6월부터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 는 다자협의체

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

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하게 되면 그 자에게는 가장 먼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(특허법 제33조). 이 권리는 양도성이 있는 일종의 재산권이 며 특허춬원여부에 관계없이 발명자는 이 권리를 발명권으로서 활용(사용, 처분)할 수 있다.

특허기숰정보센터

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특허청과 해외정보 서비 스기관으로부터 수집, 가공하여 구축한 산업재산권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고속전용 회선, 전화회선,PC 통신 등을 통하여 산업계, 연구소, 특허사무소, 학 계, 발명계 등에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언제, 어느 곳에서든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편 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특허기술전문서비스업 체. 2000.1.3부터 국내기술정보에 대해 무료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현재 약 350만 여건의 산업 재산권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.

특허권포기

특허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특하권을 소멸시키는 단 독 의사표시로서의 법률행위.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특허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 이 기재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청구항마다 포기도 가 능하다. 특허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말소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출처 특허청 홈페이지